

## 신고센터 소개

- 01 국가 재정에 대한 부정수급 행위의 지속적 발생으로, 국민들의 조세 부담 증가
- 02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 재정관련 비리척결과 부정수급에 대한 종합적 대책 모색
- 03 '13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 「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」 설치
- 04 '15년 1월 비복지 분야 보조금 신고까지 처리하는 「복지·보조금 부정신고센터」로 확대

## 신고사건 처리절차



## 신고방법

- ◎ 신고상당
  -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**110번**
- ◎ 신고방법
  - ▶ 인터넷 :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(www.acrc.go.kr)
  - ▶ 팩스 : 044-200-7972
  - ▶ 우편·방문 : (03740)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(동관) 1층 「서울종합민원사무소」
  - ▶ 모바일앱 : 국민권익위원회 부패·공익신고 앱
- ◎ 신고요령
  - ▶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(익명신고 불가)
  - ▶ 신고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, 부정수급자의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

“ 용기 있는 신고가  
청렴한 사리를  
만듭니다 ”

## 신고보상금 최대 30억

각종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

「복지·보조금 부정신고센터」가  
함께합니다.



## 신고대상

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·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·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거나 사용하는 경우



신고자는 **비밀보장**·**신분보장**·**신변보호**를 통해 어떠한 **불이익**도 받지 않습니다.



## 각종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유형(예시)

### 보조금 부정수급 주요 유형 I

영유아보육기관, 지역아동센터, 사회복지시설, 사무장병원, 실업급여, 기초생활급여 등

#### ● 영유아보육기관·지역아동센터 부정수급 유형

- 허위 교사 및 허위 아동 등록, 출석부 조작 등 방법으로 부정수급
- 급식비, 식자재비 부풀리기 등 허위 청구
- 무자격 보육교사 채용, 자격증 대여 등

#### ● 사회복지시설 부정수급 유형

- 친인척 허위 등재, 무자격자 채용 등 인건비 부정수급
- 시설 운영비 관련 허위서류 작성 등

#### ● 사무장병원 요양급여 부당청구 유형

- 비의료인이 고령의 은퇴 의사·의사·약사 등을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요양급여 청구
- 비의료인이 사단법인, 생활협동조합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요양급여 청구 등

#### ●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

- 피보험자격 취득·상실 허위신고
- 자진 퇴사임에도 해고 등으로 이직 사유를 허위신고
- 취업 사실을 은닉하고 실업급여 수급 등

#### ●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유형

- 소득사실(타인명의 통장·현금으로 수령) 은닉
- 급여수급을 위한 위장이혼 후 동일 주거지 거주
- 타인명의로 재산(자가용 등) 은닉 등

### 보조금 부정수급 주요 유형 II

#### ● 연구개발(R&D) 부정수급 유형

- 이미 개발된 기술 일부를 변경하여 신기술인 것처럼 꾸며 허위 신청
- 연구원 허위 등록, 인건비 입금 후 타계좌 재입금 요구 등의 인건비 횡령
- 연구기자재, 재료비 등 부풀리기를 통한 허위 정산 서류 제출
- 각종 연구비 목적 외 이용, 사적 이용 등

#### ● 기타 보조금·지원금 부정수급 유형

- 보조사업 신청자격 조건에 해당 되지 않음에도, 자격위조·허위·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
- 사업 실적을 부풀려 보조금을 횡령·편취
- 보조금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
-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승인 없이 처분
- 보조금 정산 후 집행 잔액 미반환 등



## 신고자 보호

**비밀보장** : 신고자의 동의 없이,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 불가, 조사업무 종사자 등이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공개할 경우 징계 또는 형사처벌

**신분보장** :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, 근무조건상 차별, 경제적·행정적 불이익을 받을 경우, 원상회복 등 적절한 조치

**신변보호** : 신고자 자신과 친족 등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, 위원회에서 경찰에 신변 보호 등 요청

### 책임감면 및 벌칙제도

- 부패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
-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 등을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- 불이익 처분을 한 자가 위원회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,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
## 신고자 보상

### » 보상

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지급 **(최대 30억)**

### » 포상

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지급 **(최대 2억)**